そいし そいしないまときな



금정소식

	기관의장	
선		
선 람		

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1-2 2020. 11. 2.(월)

(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)

버	

○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(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-1198호) ------ 2

회람				
				

발 행 : **부산광역시 금정구** 편 집 : 문화관광과(☎519-4074)

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-1198호

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일

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

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위탁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 중 수탁자의 소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혼란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.
- O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O 위탁계약 해지 일부 삭제(제8조2항)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(참조: 생활보장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 과(전화: 519-4334, FAX: 519-435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(http://www.geumjeong.go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(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공지/입찰/고시 > 입법예고)

붙임	부산광역시 의견제출서	장애인복지시설	설치	및	운영조례	일부개정	조례안	1부.

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(생	제8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	<u><삭 제></u>
기간 만료 시 시설의 운영에 사	
용하던 부대설비, 장비 및 비품	
일체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귀	
<u>속된다.</u>	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법규명	:	부산광역시	금정구	장애인복지시설	설치	및	운영	조례	개
		정안							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주 소:

○ 연 락 처 :

입법예고내용	의	 견	<u></u> 비고

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